

韓國技術士制度의 改善方向

鄭 昞 琚*

1. 머리 말

技術士法은 1963年 11月 11日에 制定 公布되어 經濟企劃院 技術管理局에서 施行되어 오다가 1967年에 政府組織法의 改正으로 科學技術處가 發足하면서 技術管理局을 吸收 運營해 온 것이 國家技術資格法이 1973年 12月 31日에 制定, 公布되면서 技術士法이 廢止되고 1981年 12月 31日에는 勞動部로 法移管이 되었다. 따라서 技術系만은 따로 科學技術處에서 主管하게 하기 위해서 1985年度에 技術士會政策委員會에서는 “科學技術法案”(全文 57個條와 附則)을 立案 審議했으나, 1986年에 이르러 이것을 土臺로 “國家技術士法案(全文 53個條와 附則)을 同理事會에서 審議決定하여 關係要路에 建議한 바 아직 實効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새로운 法案으로서 技術士의 社會的 地位向上과 優待策의 次元을 높일 길을 摸索中에 있고, 이點에 立脚해서 技術士制度의 改善方向을 잡아 계속적인 努力을 傾注할 것이다.

2. 우리나라 技術士制度의 沿革

2-1 (舊)技術士法

(舊)技術士法은 그 內容에 있어 技術士의 資格과 技術士의 業務를 完全히 統轄하는 單一法으로서의 法制化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缺點이 있었던 것이다. 卽, 同法 第 23條 “技術士의 活

用”條項이 있으나, 形式的인 것에 불과했고 技術士活用の 實現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2-2 國家技術資格法

(舊)技術士法의 大部分의 內容을 吸收하고 技術系와 技能系의 모든 各級 各種 資格을 整理해서 制定할 것이다.

2-2-1 法의 目的(法第 1條)

技術資格에 關한 基準과 名稱을 統合하여 適正한 資格制度를 確立하고 그 管理와 運營을 效率化함으로써 技術人力의 資質 및 社會的 地位의 向上과 經濟開發에 寄與한다.

2-2-2 資格制度의 基本理念

國家技術資格 制度의 基本理念은 첫째 既存資格의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고, 둘째 生産과 直結된 技術教育을 誘發促進케 하며, 셋째 資格取得者에 對하여서는 優待케 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優秀한 產業 技術者와 技能者를 養成 確保케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를 爲하여 從來에 13個 所管部處에서 36個 法令으로서 다루던 資格制度를 統一化하여 國家技術資格을 整備한 것이다. 이 36個 法令 中에 資格取得者 採用을 強制한 것은 26個 法令, 採用 自律은 5個, 採用 優待는 3個, 明示없는 것이 1個로 되어 있었다.

技術과 技能의 相關性에 있어서 이를 鼎立시켜 科學者의 博士나 技術者의 「最高資格인 技術士나 技能者의 長인 技能長이 同等한 社會的 待遇를 받게끔 하자는 것이다.

* 生産管理技術士 (工場管理), 韓國技術士會副會長

2-2-3 技術系 資格의 等級構造

| 資格基準(Qualification Criteria) | 等級(Classess) | 檢定方法(Test Method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技師 1級+7年 Class I Technician+7 Years 技師 2級+9年 Class II Technician+9 Year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經歷審查 Assesment on Experience 筆記試驗 Written Test 面接試驗 Oral Tes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卒 4 Year College Graduate 專門大卒+2年 Junior Tech. College Graduate+2 Years 技師 2級+2年 Class II Technician+2 Year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筆記試驗 (種目에 따라 實技) Written Test (Skill Test in Some Cas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專門大卒 Junior Tech. College Graduate 技能士 1級 Class I Craftsma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筆記試驗 (種目에 따라 實技) Written (Skill Test in some Case) |

1. (Grades of Engineer & Technician Group)

2-2-4 技能系 資格의 構造

| 資格基準(Qualification Criteria) | 等級(Classess) | 檢定方法(Test Method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技能士 1級+7年 Class I Craftsman+7 Year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經歷審查 Assesment on Experience 面接試驗 Oral Tes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技能士 2級+3年 Class II Craftsman+3 Years 專門大卒 Junior Tech College Graduat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筆記試驗 Written Test 實技試驗 Skill Tes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學歷, 經歷 無制限 No Requirement for Education on Experience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筆記試驗 Written Test 實技試驗 Skill Test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實技試驗 Skill Test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實技試驗 Skill Test |

2. (Grades of Craftman Group)

2-2-5 資格種目

技術系는 20 個 技術分野에서 技術士 種目 100 個를 포함하여 235 內容이고 技能系는 15 個 技術分野에서 技能士 種目 79 個를 포함하여 584 內容으로서 技術系, 技能系 합치면 819 內容에 이르고 있다.

2-2-6 資格試驗(檢定) 管理

韓國技術檢定公團法을 1976 年 11 月 5 日 制定公布하여 同年 12 月 8 日 設立하고 科技處에서 檢定施行하던 것을 1981 年 12 月 31 日 法改正으로 勞働部로 移管運營하여 왔었다. 이것 역시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法으로 改稱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技術士資格試驗은 技術士管理委員會(舊技術士法)에서 始作하여 韓國技術檢定公團을 거쳐서 오늘의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으로 옮겨졌다.

2-3 技術用役育成法

(舊)技術士法の 活用條項이 未洽하고, 經濟開發五個年計劃에 拍車를 加하면서 國內産業中 建設業의 急進的發達과 더불어 建設技術用役(技術用役의 中心)을 部處의 訓令만으로는 行政管理가 힘들게되고 Engineering 産業育成上 不得已 技術用役育成法을 制定公布하기에 이르렀다. 卽舊技術士法の 技術士活用に 關한 補完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技術用役育成法이 制定公布되기 前까지 化工部門에 1955 年度부터 엔지니어링이 民間業界에서 始作하였고, 또 內務部土木局時節에 上水道設計用役을 1957 年 下半期부터 發注한 것이 技術用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漸次로 擴大化되자, 建設部로 昇格하면서 技術用役發注量이 增加됨과 同時에 舊技術士法이 制定公布되고 建設部自體가 技術用役의 事務處理上 必要에 의해서 行政內規로서 “技術用役業務評價規定”이 制定施行되다가 여러가지 行政內規의 制定施行過程을 거치면서 1973 年 2 月 5 日에 技術用役育成法을 보게되고 技術士의 活用在 內規에서 法制化가 된 것이다. 技術用役育成法 및 同施行令의 變遷을 8 次의 改正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나, 問題의 焦點은 時限附이기는 하나 1 部에는 無資格認定 技術士 制度가 殘存하고

있는 것이다.

“技術用役育成法制定公布以前의 建設部關係訓令리스트”

※ 舊技術士法(1963. 11. 11) 制定公布

(1) 1964. 7. 25 技術用役業務評價規定 制定施行

(2) 1968. 12. 12 建設用役業者管理規定 制定施行

(3) 1971. 10. 6 技術審査委員會規定 制定施行

(4) 1971. 10. 11 建設用役業者登錄規定 制定施行

(5) 1972. 2. 11 中央設計審査委員會運營細則 制定施行

※ 技術用役育成法(1973. 2. 5) 制定公布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技術士制度는(舊技術士法)→(國家技術資格法+技術用役育成法) 등의 制定公布로서 그 基本틀은 잡기는 하였으나, 86 年 末 현재 技術士數가(4,693 名) 急增하게 되어 個人인 各技術士들에게는 他專門法(例, 建築士法·稅務士法)과 같이 資格活用の 機會를 주기에는 점점 不滿스러운 상태로 轉落하고 있는 것이다.

3. 技術用役의 概況

1986 年 6 月 現在 科學技術處에 登錄된 技術用役業體는 27 個(※ 重復登錄者除外)에 이르고, 各專門分野의(資格) 技術士從事者數는 1,261 人(全體從事者는 81,109 人: 1985 年 12 月 31 日 現在)에 이른다.

1985 年度 國內外 受注實績이 3,629 億원에 이르는 만큼 技術用役業界가 育成되었다. 여기에 從事하는 人力은 1983 年과 對比할 때 總人力에 서는 約 4 倍가까지 急伸張하였다.

또, 保證保險에 對한 付保額上的 保證保險手數料가 年間 約 15 億원(1985 年度)이었다.

技術用役이 育成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技術士業務遂行을 위한 各種保證保險中, 「技術瑕疵補完保險」或은 「技術士의 技術責任賠償保險」과 같은 特殊保證業務를 取扱하는 專用化한 信用金融制度가 아직까지 開發되지 않았다.

技術用役受注實績과 從事人力(83/85) 對比表

| | 1983年度 | 1985年度 | 備 考 |
|------------------|-------------|-------------|----------------------|
| 契約書 (단위: 천원) | 264,275,081 | 362,907,352 | 國內外 受 注를 合한 것임 |
| 全體 從事 人力數 (人) | 22,884 | 81,109 | |

4. 現行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4-1 現行 制度의 問題點要約

- (ㄱ) 技術士의 法的·社會的優待가 確固하게 實現되는 法條文化
- (ㄴ) 技術士業務遂行에 關해서 明白한 責任과 權限을 갖게 하는 法條文化
- (ㄷ) 技術士의 資格과 活用業務를 一體化시키는 法條文化

4-2 國家技術士法草案의 概要

(1) 技術士의 業務內容에 새로운 것을 追加하였고 條項中 主要한 것은 다음과 같다.

法案 第2條 第1項: 「國家技術士라 함은 登錄을 하고 그 名稱을 使用해서 科學技術(人文科學에 關聯된 것을 除外)에 關한 高度의 蓄積된 專門의 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을 要하는 事項에 關한 計劃·研究·設計·分析·試驗·生産·施工·評價·診斷·시스템化 또는 이에 關한 指導·監理·技術判斷(Technical Judgement & Decision)等의 業務에 關하여 이 法에 의한 資格을 얻은 者를 말한다」라 하고, 生産시스템·技術判斷等이 現行法보다 追加되었다.

法案第2條第2項: 「技術士業(個人技術用役)」이라함은 他人의 委託에 의하여 高度의 科學技術을 活用하여 事業 및 施設物의 計劃·研究·設計·分析·調査·試驗·監理·評價·診斷·諮問·指導·事業管理·技術判斷·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個人技術用役을 技術士業으로 呼稱을 變更한 것이다.

※ 技術判斷(Technical Judgement & decision)이라는 新用語는 法的拘束力을 갖는 技術仲裁權을 갖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技術士가 保有하는 專功技術能力으로 技術上의 和解나 또는 技術的인 仲裁(여기서는 Arbitration 이 아닌 것)을 必

要한 경우 技術的인 判斷을 내리는 業務도 考慮하게 된 것이며 評價, 診斷의 뜻과는 다르므로 區別하기 위한 것이다.

(2) 技術士의 資格取得(法案第4條)

勞動部에서 技術士部分은 科學技術處로 還元시켜 管掌

(3) 個人技術用役業務를 重點化(法案第5條)

(4) 技術士의 優待(法案第7條)

現國家技術資格法의 優待條項보다 現實的으로 強化

(5) 資格試驗의 基準과 範圍(法案第7條)

現行과 같음

(6) 指定試驗機關의 指定(法案第20條)

(7) 資格手帖의 管理(法案第33條)

(8) 技術士의 業務確認에 關한 權限 強化(法案第38條)

(9) 技術士審議委員會의 設置·運營(法案第42條)

(10) 韓國技術士會의 運營(法案第45條)

4-3 技術士의 活性化指標

4-3-1 國家技術士法의 立法上背景

○ 技術資格과 業務를 함께 法制化한 것은 建設業法(1958. 3. 11)을 爲如여하 辨理士法(1961. 12. 23), 測量法(1961. 12. 31), 建築士法(1973. 12. 16), 國土利用管理法(土地評價士에 關한 것, 1972. 12. 30) 등이 있다.

○ 現在, 技術士만이 그 資格은 國家技術資格法으로 연계되고 技術士로서의 業務는 各各分離되어 技術用役育成法과 建設業法에서 活用되고 있어, 統合運用되고 있는 他法(辨理士法의 辨理士나, 建築士法의 建築士)의 活性化보다 不確實한 社會的·法的待遇를 받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 他專門職은 國家가 資格과 業務를 一體化한 立法體制임에도 불구하고 技術士만이 勞動部所管으로 變更되어 있어 더욱 어렵고도 不振한 것으로 轉落시키고 있다.

○ 技術士制度의 先進化國際化를 위한 法制化概念의 必要性이 國際間的 交流交易增大로 因해 漸增하고 있는 現狀인 同時에 國際社會經濟發展의 要求에 따라서도 科學技術處의 所管인 管轄

法으로還元과補完하도록立法이促求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技術用役育成法에서非活性化가되고 있는個人技術用役의發展을圖謀하고資格과業務를 함께補完하는統合法인假稱「國家技術士法」의立法草案을하게된 것이다.

4-3-2 活性化를 위한立法必要性

○現在實施되고 있는「國家技術資格法」과「技術用役育成法」은 새로운時代的要請과先進化·國際化를指向하고 있는우리社會現實情에副應하기에는그內容과體制 및法體系가 점차적으로時代的인落後性이 있고活用性의未洽과實效性이貧弱한 것이라고 많은技術士들이指摘하고 있다.

○國家科學技術發展政策과密接한聯關性을 갖고科學技術에 관한高度의專門應用能力을 가진技術士는現在의勞動部所管으로부터 마땅히

科學技術處所管으로還元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技術士制度改善을段階的으로發展시키기 위해技術仲介와技術判斷業務를 포함한個人技術用役業務의範圍를擴大시켜活性化에拍車를가하고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두개인技術士의關聯法은 새로운次元에서새로히獨立된新立法을構想하게 될 것이다.二千年代를바라보고科學技術의先進國進入을科學技術處가 새로立法案을한「科學技術革新促進法」과商工部가制定한「工業發展法」(1986年1月8日公布)과同步調하고,國家技術士의活性化가國家的·社會的으로法的優待를 받는實質的이고도綜合的이고,體系的인立法化措置의早速한實現이必要的인 것이다.